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1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2. 11) 상정
-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2. 11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예산법무과장 권 희 춘)

가. 제안이유

-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· 의결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다른 조례에서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·의결 하도록 정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함.(안 제8조제2항)
- 위원회의 위원수를 13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, 위원은 조례로 설치한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,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 하는 자 3명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함.

(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)

○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 그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위원회의 회의에 연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제7항 신설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특이사항 없음.	○ 특이사항 없음.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- 없 음
- 나. 반대토론
- 없 음
- 5. 심사결과
 -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
 - 없 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
 - 없 음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5호 중 "기금의 기금운용관"을 "기금을 운용하는 자"로 한다. 제6조제1항 단서 중 "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"를 "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"로 한다.

제7조 중 "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"를 "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"로 하고, 단서 중 "위원회"를 "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"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각 기금의 통폐합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통합관리 기금운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
- 2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
- 5. 유사・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
- 6. 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
- 7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되며,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된다.

- 1. 조례로 설치한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
- 2.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
- 3.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⑦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위원회의 회의에 연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- 제9조(통합기금의 결산) 시장은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"을 "총괄기금관리관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얻어"를 "받아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처리할 수 있다"를 "관리한다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인	-
번 호	제335호
의 결	2008. 12. 22.
년월일	(제148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11. 1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· 의결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하는 한편.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다른 조례에서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·의결 하도록 정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함.(안 제8조제2항)
- 나. 위원회의 위원수를 13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, 위원은 조례로 설치한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,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함.
 (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)
- 다.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위원회의 회의에 연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제7항 신설)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5호 중 "기금의 기금운용관"을 "기금을 운용하는 자"로 한다. 제6조제1항 단서 중 "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"를 "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"로 한다.

제7조 중 "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"를 "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"로 하고, 단서 중 "위원회"를 "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"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각 기금의 통폐합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통합관리 기금운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
- 2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
- 5. 유사・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
- 6. 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
- 7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되며,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된다.

- 1. 조례로 설치한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
- 2.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
- 3.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⑦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위원회의 회의에 연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- 제9조(통합기금의 결산) 시장은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"을 "총괄기금관리관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얻어"를 "받아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처리할 수 있다"를 "관리한다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(생 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~4. (생 략)	1.~4. (현행과 같음)
5. "기금운용관"이란 시에서 운	5
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	기금을 운용하는
용관을 말한다.	자를
제6조(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) ①	제6조(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) ①
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	
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	
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<u>통</u>	<u>부</u>
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예외	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
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	
아니하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예탁금의 이자율) 제6조에	제7조(예탁금의 이자율)
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	
에 대하여는 국·공채의 이자율수	
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	
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<u>부천시통</u>	<u>부천시통</u>
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(이하 "위	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
<u>원회"라 한다)</u> 가 정하는 이자를	
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	
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	
려하여 <u>위원회</u> 에서 기금예탁금	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
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	<u>위원회</u>
있다.	
제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	제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
통합기금의 운용・관리 및 각	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각
기금의 통폐합 조정을 심의하기	기금의 통폐합에 따른 조정에 관한

______ 심의하기 위하여 부

- 위하여 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 기금의 개별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- 1.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

 관한 주요사항
- 2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

 변경
- 3.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

 4.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

 및 기간의 조정
- 5. 유사·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
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되 며,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.
- 1.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

 있는 기금운용관
- 2.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2명과 금융관련 전문가 2명

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개 정 안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
- 2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에 관 한 사항
- 4.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
 - 5. 유사·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
 - 6.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
 - 7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.
 -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되 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는 자가 된다.
 - 1. 조례로 설치한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

혀 행

-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여 위촉하는 자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.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 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통합기금의 결산) ① 시장은 제9조(통합기금의 결산) 시장은 통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 을 받아야 한다. 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 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(통합기금의 운용・관리) ① 제10조(통합기금의 운용・관리) ① 통합기금은 시장이 운용・관리 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

개 정 안

- 2.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
- 3.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 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⑦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 고 판단될 경우와 위원회의 회 의에 연 3회 이상 출석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-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통합기 합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 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

현 행	개 정 안
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급 대행하도록 하고, 총괄기금 관리관은 예산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.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 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. ③ 통합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 ④ (생 략)	총괄기금관리관이